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K3.K4리그 클럽라이선스 규정

Play ON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자격부여주체

제2장 클럽자격부여기준

- 제5조 기준의 의미 등

제1절 스포츠기준

- 제6조 스포츠기준 설명
- 제7조 선수 등록
- 제8조 선수 계약
- 제9조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
- 제10조 유소년 육성프로그램
- 제11조 유소년 팀의 조직
- 제12조 교육 참여

제2절 시설기준

- 제13조 시설기준 설명
- 제14조 경기장 소유
- 제15조 경기장 시설
- 제16조 훈련시설
- 제17조 경기장 안전 규칙

제3절 인사 및 행정기준



제18조 인사 및 행정 기준의 설명

제19조 클럽사무국

제20조 클럽 임직원

제21조 클럽 코칭스태프

제22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명확성

제23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계약변경 등

제24조 시즌 중 클럽관계자의 변경

제4절 법적기준

제25조 이행확인서 등

제26조 클럽의 지배구조

제27조 문서의 제출

제28조 징계규정 및 행동 강령

제29조 법률담당자 및 자문

제5절 재무기준

제30조 재무기준 설명

제31조 재정건전성 확보

제32조 연간재무제표 및 회계감사

제33조 이행지체 된 보수 및 세금

제34조 미래재무정보

제3장 자격부여기관 등

제35조 클럽자격업무 담당부서

제36조 의사결정 기구 구성 및 자격

제37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제38조 클럽자격재심위원회

제4장 지원클럽의 자격 및 의무사항 등



제39조 지원클럽의 자격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유효기간, 양도 및 취소

제5장 절 차

제1절 심사절차

제41조 신청절차

제42조 심사 및 결정

제2절 재심절차

제43조 재심신청권자 등

제44조 재심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제45조 불가쟁력

제6장 징 계

제46조 징계의 종류

제47조 징계의 결정

제48조 징계의 절차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국내대회의 적용

제3조 제 1절 7조 ‘선수 계약’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4조 제 1절 10조 ‘유소년 팀의 조직’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5조 제 4절 33조 ‘클럽의 지배구조’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2019. 08. 30. 제정

2021. 02. 15. 개정

2021. 12. 14. 개정

2024. 11. 12. 개정

2025. 09. 0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K3·K4리그의 참가자격 및 자격의 부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K3리그와 K4리그를 말한다.
- ② 「참가자격」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말한다.
- ③ 「클럽라이선싱 기준」은 리그 참가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클럽이 준수해야 하는 5개의 카테고리 (스포츠기준, 시설기준, 인사 및 행정기준, 법적기준, 재무기준)로 구성된 요건을 말한다.
- ④ 「필수기준」이라 함은 K3리그/K4리그를 참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그에 참가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한다.
- ⑤ 「기본기준」이라 함은 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그 참가는 할 수 있으나 협회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 ⑥ 「권장기준」이라 함은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클럽이 지향해야 하는 기준으로 협회로부터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 ⑦ 「클럽」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K3리그/K4리그 참가자격을 신청하는 축구팀에 대한 책임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 ⑧ 「클럽자격심의회」, 클럽의 리그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써 1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⑨ 「클럽자격재심위원회」, 클럽의 리그 참가자격 부여 결정을 대한 재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⑩ 「클럽관계자」라 함은 본 규정의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참가자격을 유지하고 K3/K4리그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존 참가 클럽과 K4리그에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클럽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자격부여주체

본 규정에 의거 협회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하고 리그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제2장 클럽자격부여기준

제5조 기준의 의미 등

- ① K3/K4리그 참가 자격 취득을 위해 클럽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 5가지 기준으로 분류 된다.
 1. 스포츠기준
 2. 시설 기준
 3. 인사 및 행정기준
 4. 법적기준
 5. 재무기준
- ② 6조부터 33조까지 정의된 기준은 K3/K4리그 참가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클럽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필수기준, 기본기준, 권장기준”으로 구분된다.

제1절 스포츠기준

제6조 스포츠기준 설명

클럽은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 계약, 의료 지원서비스 제공, 선수(유소년 포함)육성에 대한 세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선수 등록 (필수기준)

클럽의 모든 선수는 협회 및 리그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8조 선수 계약 (필수기준)



- ① 클럽은 클럽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클럽과 선수간의 계약은 연봉계약과 수당계약으로 구분한다.
- ② 클럽과 선수의 계약 관련 세부 사항은 「K3·K4리그 선수 계약 세칙」에 의거한다.
- ③ K3리그 클럽은 최소 20명 이상의 선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K4리그 클럽은 최소 5명 이상의 선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봉계약 선수 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분(시즌)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선수 수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 ⑤ K3리그로 승격한 클럽의 경우, 승격 연차에 따라 아래 최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선수와 연봉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구분(시즌)	1년차	2년차	3년차
2029년까지	10명	15명	20명
2030년부터	15명	20명	-

- ⑥ 외국국적 선수는 제3항과 제4항의 최소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 (필수기준)

클럽은 클럽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에게 매년 심혈관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클럽은 선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수(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기본기준)

- ① 클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선수(유소년 포함) 육성의 목적 및 철학
 2. 유소년 팀의 조직도, 예/결산 현황
 3. 유소년 팀 관리 담당자(지도자, 의료담당자, 관리자 등)들의 현황 및 업무 분장 등
 4. 유소년 육성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시설 등
 5. 축구 교육 프로그램 (기술, 전술, 체력 등)
 6. 교육 프로그램 (경기규칙, 심판교육, 부정방지, 교육계획 등)

제11조 유소년 팀의 조직 (필수기준)

- ① 클럽은 반드시 아래 연령대 중 최소 하나의 전문 축구 유소년 팀을 보유하여야 한다.



1. 18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8 팀”)
2. 15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5 팀”)
3. 12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2 팀”)
4. 제1항의 각 유소년 팀은 매년 협회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협회가 주최하는 리그 및 공식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신규 클럽은 유소년 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리그 참가 다음 시즌 리그가 시작되기 전까지 반드시 유소년 팀을 보유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참여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소속 선수 및 모든 코칭스태프가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아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IFAB 경기규칙
 2. 도핑방지
 3. 부정 방지
 4.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 (안전교육 등)
- ② 클럽은 사무국 대상으로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기준

제13조 시설기준 설명

클럽은 리그 홈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K3·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에 따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장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경기장 소유 등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연고지역 내 K3.K4리그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다음 시즌 리그 경기를 위해 경기장 사용이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기장 사용 확약서, 서면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기장은 제15조 경기장 시설(필수기준) 및 「K3·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에 명시된 요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경기장은 클럽이 연고지로 승인받은 지역 관할 범위 내(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야 하



며, 연고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협회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경기장 시설 (필수기준)

- ① 클럽은 경기장이 법률에 의거한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 및 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의 경기장은 아래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K3리그 / K4리그 좌석 수 1,000이상
 2. 천연잔디 또는 협회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3. 1,0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시설 설치
 4. K3· K4리그 경기장 운영 세칙 내 요구 조건
- ③ 상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협회의 특별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훈련시설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연고지역 내 연중 상시 사용 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이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클럽은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산하 유소년 팀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훈련 시설에는 선수대기실 및 기타 편의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7조 경기장 안전 규칙 (기본기준)

- ① 클럽은 경기장 안전 규칙을 마련하여, 관중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게시해야 하며,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장 허가 기준
 2. 경기 취소 또는 연기에 관한 사항
 3. 그라운드 난입, 이물질 투척, 욕설 및 인종차별 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4. 흡연, 음주, 화약류 사용 등에 대한 제재
 5. 위험 예방을 위한 좌석 규칙
 6. 관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타 사항

제3절 인사 및 행정 기준



제18조 인사 및 행정 기준의 설명

클럽은 클럽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지식,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클럽사무국 (필수기준)

- ① 클럽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무국을 설치하고, 숙련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 각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는 사무국 인원을 다음 인원 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클럽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무국을 설치하고, 숙련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K3리그	K4리그
사무국 인원수	대표(또는 단장), 사무국장 포함 6명 이상	대표(또는 단장), 사무국장 포함 4명 이상

- ③ 클럽은 사무국 정보(위치, 임직원 명단, 사무국 조직도 및 업무 분장 현황 등)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클럽은 상기2항의 요구된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총원 일정과 대상자를 명시한 인력 총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인력을 반드시 총원하여야 한다.

제20조 클럽 임직원 (필수기준)

- ① 클럽은 사무국 내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 명이 여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1. 대표이사(또는 단장) : 클럽의 전체 경영과 운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표이사(단장)을 선임
 2. 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3. 재무담당 : 재무업무를 담당하며, 구단은 의무적으로 재정보증보험 가입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예방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4. 안전담당 : 안전 및 보안업무를 담당자
 5. 미디어담당 : 미디어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
 6. 의료지원담당 : 선수단에 대한 의료지원 및 도핑방지정책을 책임지는 의료지원담당자
 7. 마케팅 담당 : 클럽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 담당
- ② 제1항의 3호부터 7호까지의 각 업무 분야에 대해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협회는 추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클럽 코칭스태프 (필수기준)

- ① 클럽은 경기 및 훈련에 대한 경력, 기술,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아래의 인력을 반드시 코칭스태프로 고용해야 한다.
- ② 클럽이 고용한 각 코칭스태프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1. 의무 트레이너

- I. 경기 및 훈련 중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재발에 책임을 지며, 다음 자격을 소지한 자는 소속 클럽의 모든 경기에 반드시 벤치에 착석해야 한다.
- II. 의무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은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국가공인 물리치료사 (보건복지부)
 - 나.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공단)
 - 다. 선수트레이너(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사단법인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 라. 운동처방사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 III. 협회 의무분과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의무 트레이너의 자격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2. 클럽 감독

- I. 감독은 축구팀의 전술적, 기술적 등 축구 분야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
 - 나. AFC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다. 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클럽 코치

- I. 코치는 축구팀의 전술적, 기술적 등 축구 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을 지원하는 지도자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AFC B급 또는 GK 레벨2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
 - 나. AFC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다. 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4. 유소년팀 감독

- I. 유소년팀 감독은 제11조에 명시된 유소년 팀의 축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서, 협회 등록 규정에 명시된 연령대별 감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명확성 (기본기준)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들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회 요청 시 해당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계약 변경 등 (기본기준)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들의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된 계약서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시즌 중 클럽관계자의 변경 (기본기준)

- ①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되는 자들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계약 작성 후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클럽은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되는 자들의 변경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각 클럽의 책임 하에 협회 등록 사이트에도 등록해야 한다.

제4절 법적기준

제25조 이행확인서 등 (필수기준)

- ① 클럽은 협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이행 확인서 및 정보 요구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 ③ 클럽은 제1항의 내용을 선수, 지도자, 클럽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26조 클럽의 지배구조 (필수기준)

- ① 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은 독립된 법인 형태로 참가해야 한다.
- ② 클럽은 협회에 클럽의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 문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클럽은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리그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1.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스포츠 성과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나 증권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2.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3.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관리기구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을 고용,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는 경우
4. 클럽 또는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클럽 주주나 임직원의 투표권 50% 이상을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다른 클럽의 주주가 되는 경우
5. 클럽의 구성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6. 기타 클럽 또는 그 클럽의 주주나 임직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스포츠적 성과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27조 문서의 제출 (필수기준)

- ① 독립 법인 형태로 구성된 클럽은 협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클럽 내규(운영규정, 징계규정 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클럽명, 사무소 주소, 법인 종류, 대표이사나 대표자 포함)
 4. 법인 인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주주 명부 (또는 회원/사원 명부)
 6.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7. 이행확인서
 8. 정보 요구 및 이용 동의서

제28조 징계규정 및 행동 강령 (필수기준)

- ① 클럽은 관련 법률 및 FIFA, AFC,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 선수단(선수 및 스태프)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징계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② 징계규정에는 준수 사항, 제재,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③ 행동 규범은 클럽 규칙 및 클럽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규정을 통하여 보완 되어야한다.

제29조 법률담당자 및 자문 (권장기준)

- ① 클럽은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법률 교육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지정해야 한다.
- ② 클럽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절 재무기준



제30조 재무기준의 설명

클럽은 재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유치를 이끌어내어 축구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건전성 확보(필수기준)

- ① 클럽을 창단하는 경우, 클럽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고지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80%이상의 재정지원 확보
 2. 재정 지원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가 200억원 이상(최근 3년간) 충족 및 연고지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20%이상의 재정지원 확보
 3.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예산의 90%이상 재정지원을 확보한 경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② 위 1항의 구단 운영을 위한 최소 예산액은 매년 협회에서 별도 책정하여 신규팀 신청 접수시 안내한다.

제32조 연간재무제표 및 회계감사 (필수기준)

클럽은 매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행지체 된 보수 및 세금 (필수기준)

- ① 클럽은 당해 연도 전·현직 피고용인(FIFA RSTP에 정의된 선수 및 클럽라이선싱 규정“인사 및 행정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인원)에 대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와 관련된 모든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 만약 지급금이 연체된 경우, 다음 연도 1월 2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한다.
 1. 미지급금 전액 상환 내역
 2. 채권자와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 또는 지급기한 연기
- ② 클럽은 모든 적절한 방식을 통해 피고용인 및 관공서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4조 미래재무정보 (기본기준)

- ① 클럽은 클럽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래 재무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미래재무정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 실적



2. 차년도 예산서

- ③ 클럽이 제출한 전년도 예산 대비 실적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협회는 이를 자격 부여 심사의 자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예산서가 재무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클럽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클럽은 반드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부여기관 등

제35조 클럽자격업무 담당부서

- ① 협회는 클럽자격 부여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 ②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준비, 실행 및 향후 발전 방안 수립
 - 2.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행정 지원 제공
 - 3. 리그의 참가 자격을 부여받은 클럽에 대한 지원, 자문 및 모니터링
 - 4.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평가 보고서 작성
- ③ 담당부서는 업무 처리 중에 얻은 클럽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36조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자격

- ① 협회는 아래 두 개의 의사 결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1. 클럽 자격 심의위원회 (1심 기구)
 - 2. 클럽 자격 재심위원회 (재심 기구)
- ② 의사 결정 기구는 클럽에 대한 참가 자격 부여를 결정하고, 규정에 명시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③ 의사결정기구의 인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한다.
- ④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임기 중 교체 또는 총원이 가능하다.
- ⑤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엄격한 기밀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 ⑥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클럽자격재심위원회의 모든 위원(위원장 포함)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⑦ 대회위원장, 기술본부장, 대회운영본부장, 협회 내부 변호사(1인)은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사 및 외부 인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⑧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인원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 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 ①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아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1. 클럽의 참가 자격 승인 또는 미승인
 2.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클럽에 대한 제재
 3. 클럽의 참가 자격 취소
- ②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자료의 재제출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클럽의 참가 자격 미승인, 취소 또는 제재 부과 시, 해당 결정은 사유를 포함하여 클럽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 ④ 재심 청구 기한까지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 ⑤ 본 규정에 명시된 제출 요구 서류의 미제출 또는 협회가 설정한 마감일 이후 제출에 따른 참가 자격 불승인 시,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재심 대상이 아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클럽자격재심위원회

- ①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클럽의 참가 자격 승인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②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재심청구인이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위원회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을 재심사하여 해당 결정을 유지하거나, 필요시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만을 참고한다.
- ④ 재심 신청서는 본 규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지원클럽의 자격 및 의무사항 등

제39조 지원클럽의 자격

클럽은 국내 축구대회(리그)에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로 협회에 등록



된 클럽 및 등록 예정 클럽으로 한다.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유효기간, 양도 및 취소

- ① 협회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에서 클럽 자격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 자격 부여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② 협회는 본 규정 6조부터 33조까지 명시된 각 기준 내용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클럽이 제출한 서류와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 ③ 리그 참가 자격은 한 시즌에 한해 유효하며, 사전 통지 없이 만료 된다.
- ④ 클럽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클럽이 부여받은 자격은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클럽 자격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클럽자격부여 후 본 규정 제2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3개월) 내 개선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클럽이 파산, 특별청산, 회생 또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클럽이 합병, 분할, 사업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양도할 경우
 4. 기타 법원의 결정 등 클럽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클럽이 협회 정관에 의거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⑤ 클럽은 부여받은 참가 자격을 제3자(타 클럽이나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 ⑥ 자격을 부여 받은 클럽은 시즌 중에 클럽의 운영 주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시즌 라이선스 신청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절 차

제1절 심사절차

제41조 신청절차

- ① 38조에 명시된 클럽만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클럽은 자격부여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③ 협회는 자격부여신청 절차, 주요평가 과정 및 진행계획 등을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클럽은 리그 참가를 위해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자격 부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협회는 클럽이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2주 이내에 해당 클럽에게 서류의 재제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협회는 클럽이 서류 준비 등의 사정으로 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7일의 이내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심사 및 결정

- ① 협회는 모든 클럽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 ② 협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클럽의 관련 시설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클럽은 협회의 자격심사와 관련해서 협회 등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참가자격 결정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부여 여부와 징계 여부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제2절 재심절차

제43조 재심신청권자 등

- ①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부여 신청이 기각된 자
 2. 자격 취소 결정을 받은 자
 3. 자격은 인정되나 별도의 징계를 받은 자
 4. 결정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심을 통해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이 있는 경우
- ② 클럽의 재심신청은 청문 절차 실시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재심이 철회된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제44조 재심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 ① 재심청구인은 1차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청구된 재심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 ② 제①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류 등은 재심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③ 재심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일자 기입 및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1. 클럽자격심의위원회 결정 중 재심 청구 사항
 2. 재심 청구 사유
 3. 재심 청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는 근거자료
- ④ 재심 청구 접수시, 협회(담당부서)는 즉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클럽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⑥ 클럽자격재심위원회 결정은 재심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과와 사유



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심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45조 불가쟁력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 없거나 재심이 결정되면 이에 대하여 다룰 수 없다.

제6장 징 계

제46조 징계의 종류

① K3.K4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위반(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제출 기한 미준수, 의사결정기구 또는 사무국의 협조 미이행, 라이선싱 기준 미충족 등)한 경우, 클럽 또는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클럽을 대상으로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경고
2. 벌금
3. 승점감점
4. 무관중 경기
5. 홈경기 개최 금지
6. 중립지역 경기
7. 신규 선수 영입 금지
8. 자격정지
9. 하위리그 강등
10. 자격박탈
11. 이행보증금 납부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12. 보충역(군대체선수) 선수 등록 금지
13. 상금 / 지원금 지급 보류
14. 협회 공정소위원회 또는 공정위원회 회부

② “클럽 라이선싱 기본 기준’ 불이행 시, 최소 제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위반행위	최소 제재 기준
1	‘기본 기준’ 2개 이내 미이행	경고
2	경고 후, 연속 동일 ‘기본 기준’ 미이행	클럽자격심의위원회 회부
3	‘기본 기준’ 3개 이상의 미이행	클럽자격심의위원회 회부

제47조 징계절차



- ① 징계 절차 및 관련 사항은 본 규정과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② 본 조항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③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는 본 규정에서 정한 ‘클럽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클럽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
- ④ 클럽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제재 결정을 위해 이를 공정위원회의에 회부 할 수 있다.
- ⑤ 사안이 중대하여 공정위원회의에 회부 될 경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제재를 결정한다.
- ⑥ 제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은 클럽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의 결정

- ① 본 규정을 포함한 협회의 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클럽 및 자격을 부여 받은 팀을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클럽 및 자격을 부여 받은 팀에 대한 제재의 종류, 형태 및 범위는 제45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제재의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본 규정 위반의 성격 및 심각성
 2. 동일 시즌 또는 직전 시즌부터 2회 연속으로 규정 위반이 반복된 경우
 3. 규정 위반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가중처벌 적용 여부
 4. 과거에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경고, 교육 또는 제재가 있었는지 여부
 5.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재
 6. 제재 경감 또는 강화 사유, 기타 제재와 관련하여 적절히 검토해야 할 사안
- ④ 클럽이 2개 이상의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장 심각한 위반 사안을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하며, 해당사유에 따라 제재는 강화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9년 8월 30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클럽자격심위원회 의결사항(2021년 10월 5일)을 승인하고 개정되었다.
4. 본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개정되었다.



5. 본 규정은 2025년 9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개정되었다.

제2조 국내대회의 적용

클럽의 본 규정에 따른 협회 주최 및 주관 대회의 참가기준은 2021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절 제7조 ‘선수 계약’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1. 2019 K3리그 참가클럽과 신규 참가클럽은 예외로 하여, 선수 계약 세칙에 따라 연도별 연봉 계약 선수 수를 준수하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들과는 반드시 ‘수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당계약(훈련, 출전, 승리, 연승수당 등)’의 지급 조건은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 제1절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019 K3리그 참가클럽과 신규 참가클럽은 2022년도 리그 참가 전까지, 2019 내셔널리그 참가클럽은 2023년도 리그 참가 전까지 제10조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절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1. 본 규정 시행 당시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3·4리그 참가 클럽은 본 규정 시행 이후 2021년 11월 30일 제33조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에 대한 조건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단이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이외 축구발전지원금(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 10월 5일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의결, 2021년 12월 14일 이사회 승인)

제6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클럽라이선싱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